무배당 KB 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재가입계약용)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재가입계약용)

나. 보험종목의 세목
- 1종 : 간편심사형
- 2종 : 일반심사형

다. 기타
-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예. “무배당 KB000신간편가입건강보험”)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1종(간편심사형)

①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특 별 약 관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사고 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Ⅱ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비운전자)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② 갱신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Ⅱ(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재가입시 재가입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함)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함.
2-1. 재가입시 잔여보험기간이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한 보험기간 중 가장 긴 보험기간을 적용함.
3.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3-1. 3.에도 불구하고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4-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5.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갱신종료나이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80세
그 외	100세

나. 2종(일반심사형)

①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특 별 약 관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II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비운전자)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② 갱신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재가입시 재가입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함)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함.

2-1. 재가입시 잔여보험기간이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한 보험기간 중 가장 긴 보험기간을 적용함.

3.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3-1. 3.에도 불구하고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4-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5.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갱신종료나이
질병사망【갱신계약】	80세
그 외	100세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2)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됨(5년, 10년)

나)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다)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각 담보별 갱신 보험기간 동안 적용함.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5)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에서 규정한 보장성 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나. 적립보험료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않음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다.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한다.

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1-α) + 외부지표금리 × α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frac{A/B + C}{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a / (a + b + c + d)
회사채 가중치(β2) = b / (a + b + c + 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 + b + c + 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 + b + c + 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를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16.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17.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가.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단,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함)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나.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0.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21. 기 타

가. 이 상품은 "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 사업방법서 별지 "8.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하고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다. 본 상품의 1종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2) 계약자가 1종(간편심사형) 가입 시,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3) 계약자가 1종(간편심사형) 가입 시,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과 2종(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2종(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함. 상기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붙임1 참조)을 받아야 함.
4)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1종(간편심사형)을 청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2종(일반심사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 다만, 해당 일반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5) 회사는 4)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을 경우, 1종(간편심사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함
6)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7) 6)에 의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라.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안내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 및 설명하여야 함.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봄.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기명)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무기명)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 됨.
3) 위 2)의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4)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음.
5) 위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대리청구인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며, 회사는 가입시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함.

마.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바. 회사는 암 직접치료입원일당의 경우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상품설

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사. 회사는 암 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아.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종 · 2종>

1) "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 계약에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2) 2종(일반심사형)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1종(간편심사형)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3)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으로 고정하여 운영함
4) 아래의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해 가입가능함.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II

5) 아래의 특별약관은 비운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6)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7)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8) 아래의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1종>

8)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특별약관과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9)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10)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종>

11)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특별약관과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12)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13)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붙임1)

간편심사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table>
<tr><td>상품명</td><td>1종 (간편심사형)</td><td>2종 (일반심사형)</td></tr>
<tr><td>보장내용</td><td>-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1천만원
: 상해로 사망시 1천만원
- 질병사망(간편가입) 1천만원
: 질병으로 사망시 1천만원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1만원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간편가입) 1만원
: 상해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상해수술비(간편가입) 10만원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 10만원
- 질병수술비(간편가입) 10만원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1회 10만원</td><td>- 일반상해사망 1천만원
: 상해로 사망시 1천만원
- 질병사망 1천만원
: 질병으로 사망시 1천만원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1만원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 1만원
: 상해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상해수술비 10만원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 10만원
- 질병수술비 10만원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1회 10만원</td></tr>
<tr><td>계약승낙 여부</td><td>일반심사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td><td>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보험료 예시</td><td>
<table>
<tr><td>나이</td><td>남자</td><td>여자</td></tr>
<tr><td>50세</td><td>○○○ 원</td><td>○○○ 원</td></tr>
<tr><td>60세</td><td>○○○ 원</td><td>○○○ 원</td></tr>
<tr><td>70세</td><td>○○○ 원</td><td>○○○ 원</td></tr>
</table>
※ 기준 :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td><td>
<table>
<tr><td>나이</td><td>남자</td><td>여자</td></tr>
<tr><td>50세</td><td>△△△ 원</td><td>△△△ 원</td></tr>
<tr><td>60세</td><td>△△△ 원</td><td>△△△ 원</td></tr>
<tr><td>70세</td><td>△△△ 원</td><td>△△△ 원</td></tr>
</table>
※ 기준 :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td></tr>
</table>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드래그 및 텍스트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보험설계사 _____(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자 _____(인/서명)

(붙임2)

간편심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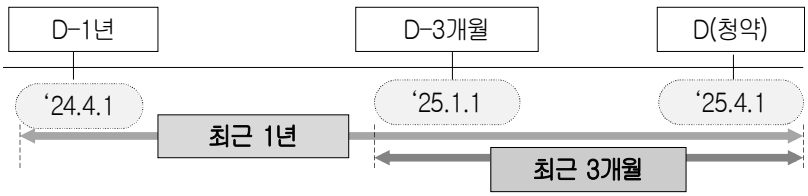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단, 통신판매계약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녹취를 통해 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 3(개월), ◆ : 1(년), 청약일 : 2025년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최근 1년 이내'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각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3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이륜자동차(영업용)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KB손해보험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